

입법의견조사 96-3

최근입법의견 동향

- 1996. 6.11 ~ 1996.11.30 -

1996.12.

研究者 : 金明淵(先任研究員)

宋永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최근입법의견 동향

I.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9
II. 최근입법의견 현황	11
III. 최근입법의견 동향	13
◎ 헌 정	13
· 『국회법』 개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 통일 · 외교	16
· 『북한탈출주민보호및정착지원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국 방	17
·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통합방위법(가칭)』 제정의견	
◎ 일반행정	19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내무 · 지방행정	19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견	
·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서울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은천법』 개정의견
- 전자주민카드도입관련 입법의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분권법(가칭)』 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문화 · 공보 26

- 『공연법』·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방송법』 개정의견
- 스크린쿼터제관련 입법의견
- 『예술의전당법(가칭)』 제정의견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의견

◎ 교육 · 학술 32

-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교육법』 개정의견
- 『사학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서울대법(가칭)』 제정의견
- 신직업교육체제마련을 위한 입법의견

◎ 노동 35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노사관계개혁관련 입법의견
- 『시간제고용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가칭)』 제정의견

◎ 재정 · 경제 43

-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관련 입법의견
- 『금융기관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상속세법』 개정의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가칭)』 제정의견
- 소비자정책관련 입법의견
- 예산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외자도입법』 개정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의견

◎ 통상 · 산업 60

- 『국책사업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영세소규모기업지원관련 입법의견
- 『유통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의견
-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농림 · 수산 63

- 수매제도관련 입법의견
- 『수의사법』 개정의견
-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 · 교통 64

- 『건설산업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건축법』 개정의견
- 교통행정일원화관련 입법의견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의견

· 『지하수법』 개정의견	
◎ 과학기술 · 정보통신	67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환경	68
·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입법의견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견	
◎ 보건 · 복지	70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관련 입법의견	
·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자원봉사법(가칭)』 제정의견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법원 · 법무	75
·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검 · 경의 중립화관련 입법의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적법』 개정의견	
· 『민법』 개정의견	
· 『민사소송법』 개정의견	
· 『범죄신고자등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의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소년법』 개정의견
-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위임입법관련 입법의견
- 『점포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안관련 입법의견
- 『집행법(가칭)』 제정의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형법』 개정의견
- 환경사범관련 입법의견
-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 정부 확정 노동법개정안 요약 91
 (96.12.3)

최근입법의견 동향

최근입법의견 동향

I.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 헌법, 2 국회, 제2권3 선거·정당
統一·外交	제15권15 국가보훈, 제47권44 외무, 45조약(1), 제48권45 조약(2), 제49권45 조약(3)
國 防	제14권13 군사(1), 제15권13 군사(2), 14 병무
一般行政	제3권4 행정일반
內務·地方行政	제4권5 국가공무원, 제10권10 지방제도(1), 제11권10 지방제도(2), 제12권11 경찰, 제13권12 민방위·소방
文化·公報	제18권17 문화·공보
教育·學術	제16권16 교육·학술(1), 제17권17 교육·학술(2)
勞 動	제40권10 노동(1), 제41권40 노동(2)
財政·經濟	제20권19 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 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 내국세(1), 제23권20 내국세(2), 제24권21 관세, 22 담배·인삼
通商·産業	제25권23 통화·국책·금융, 제30권28 상업·무역·공업, 제31권29 공업규격·계량, 30 공업소유권, 제32권31 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 전기·가스
農林·水産	제26권24 농업(1), 제27권24 농업(2), 제28권25 축산, 26 산림, 제29권27 수산
建設·交通	제34권33 국토개발·도시, 제35권34 주택·건축·도로, 제36(I)권35 수자원·토지·건설업(1), 제36(II)권35 수자원·토지·건설업(2), 제42권41 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 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 해운(1), 제45권42 해운(2)
科學技術·情報通信	제19권18 과학·기술, 제46권43 체신
環 境	제39(I)권39 환경(1), 제39(II)권39 환경(2)
保健·福祉	제37(I)권36 보건·의사(1), 제37(II)권36 보건·의사(2), 제38(I)권37 약사, 38 사회복지(1), 제38(II)권38 사회복지(2)
法院·法務	제5권6 법원, 제6권7 법무, 제7권8 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 형사법

II. 최근입법의견 현황

입법의견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형태 즉,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되기를 원하거나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특히 일반국민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영역에서 입법의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 전문가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입법관계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이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입법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의 불비 및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며, 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의견은 입법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견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관계자인 정부나 국회에 국민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내지 입법과정에 기여함에 있다.

1996년 6월 1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은 총 96건이다.

입법의견은 조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입법의견은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입법의견은 입법의 공백 내지 불비에 따른 법령제정의견과 법령과 현실의 부조화에 따른 법령개정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6년 6월 1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 사이에 제기된 국민의 입법의를 분야별로는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와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 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3건	-	3건
◎ 통일·외교	1건	1건	-
◎ 국 방	3건	2건	1건
◎ 일반행정	2건	1건	-
◎ 내무·지방행정	8건	4건	4건
◎ 문화·공보	10건	3건	7건
◎ 교육·학술	5건	3건	2건
◎ 노 동	5건	2건	3건
◎ 재정·경제	10건	2건	8건
◎ 통상·산업	6건	3건	3건
◎ 농림·수산	3건	1건	2건
◎ 건설·교통	7건	1건	6건
◎ 과학기술· 정보통신	2건	1건	1건
◎ 환 경	3건	-	3건
◎ 보건·복지	8건	3건	5건
◎ 법원·법무	22건	5건	16건
총 건 수	96건	32건	64건

Ⅲ. 최근입법의견 동향

헌 정

『국회법』 개
정의견

■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회의장내 폭언에 대하여 징계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유권해석권을 명문화하여야 함(진재훈 청주대 교수, 『국회법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서울 96.10.17, 4면).

■ 복수상임위원회제 도입

①의원 1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복수상임위원회제'를 도입하거나 대체토론과 축조심의를 의무화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②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청장·안기부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함(이범준 성신여대 교수, 『국회법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서울 96.10.17, 4면).

■ 국회 로비제도 법제화

- 각종 이익집단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회로비과정의 법제화가 시급한 바, ①이익단체대표들은 국회로비스트를 공식 등록하고, ②로비에 따르는 각종 법규의 제정으로 관련로비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집단의 의견표출 통로인 국회공청회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함(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 96.11.17, 3면).
-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인 공청회개최를 소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청회 의사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참석

에서 5분의 1로 완화하여 공청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신한국당, 「공청회활성화 방안」, 중앙 96.11.17, 3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66면) · 제8호(64면) · 제9호(85~86면) · 제11호(66면) · 제13호(43면) · 제94-1호(48면) · 제94-2호(76~77면) · 제94-3호(86~87면) · 제95-2호(81면) · 제96-2호(16~17면) 참조

『정당법』 개
정의견

■ 국회의원당선자의 당적변경

①정당이 의원선출기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당선자는 최소한의 정당·의회활동을 벌인 후 당적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②국민소환제도(리콜제)를 도입하여 당적변경 또는 의회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은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소환하여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함. ③정당정치를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정당선택·개인선택의 2개 투표를 실시하여 전국구위원을 총 의원의 3분의 1까지 증원해야 할 것임(김영래 아주대 교수, 세계 96.6.12, 5면).

■ 정무직의 당무 허용

- 대통령제 하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인사들이 입법부의 직책을 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대통령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자격이 있으므로 대통령의 선거유세지원은 허용해야 함(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세계 96.6.13, 5면).

- '정당선택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바, 정당가입 및 당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철폐되어야 함(세계일보 기획·연재, 96.6.14, 29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68면) · 제8호(66면) · 제9호(86면) · 제10호(72~73면) · 제11호(68~69면) · 제12호(68~69면) · 제96-1호(15~16면) · 제96-2호(17면) 참조

<여·야 정치제도 개선안 비교>

법안 및 내용 \ 정 당		신한국당	국민회의·자민련
국 회 법	의장권한강화	찬 성	반 대
	의장 당적 보유금지	반 대	찬 성
	최초 개원시 의장 직무대행	최다선의원중 연장자	현행(최고령자)
	대정부질문	임시국회대표연설폐지	대표연설유지
	상임위운영	서면질문제 도입	현행유지
정치 자금 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축 소	확 대
	지정기탁금	유 지	폐 지
	후원회제도	활성화	현 행
정당 법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허용	찬 성	반 대

(세계 96.11.16, 5면).

『헌법재판소
법』 개정의
견

■ 법원판결 헌법소원대상 여부 논란

-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의 구제를 대전제로 하는 만큼 법원의 판결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이석연 변호사, 세계 96.6.14, 29면).
- 국민은 법령과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바,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도 어긋남.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여부만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기관인 만큼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단순한 심급의 연장이나 '재판을 재판하는 것'은 아님(김학성 강원대 교수, 세계 96.6.14, 29면).
- 『헌법』 제107조제2항은 대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는 바, 『헌법』의 개정 없이 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위헌임(서정우 변호사, 세계 96.6.14, 29면).

■ 헌법재판소연구관 확보방안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속도의 제고와 헌법연구 및 판단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일정 수의 자체연구관 확보를 요하는 바, ①헌법연구관 출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②헌법연구관보 등 임용시험을 공채로 치른 뒤 합격자가 10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근무했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법개정을 통하여 필요인력의 유인과 장기근속의 유도를 도모하도록 함(법정신문 96.11.18, 6면).

※ 「입법의견조사」 제10호(69면) · 제13호(47~48면) · 제18호(88면) · 제96-1호(16~17면) · 제96-2호(20~21면) 참조

통일 · 외교

『북한탈출주민보호및정착지원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 건

■ 효율적인 탈북자 지원

탈북자의 급증으로 법정보상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바, 『귀순북한동포보호법』과 같이 귀순 유도와 보상위주의 냉전시대의 법률로는 탈북자의 사회적응 · 정착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탈북자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이므로 ①탈북자 관리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고, ②집단보호시설을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비롯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③보호시설 수용후의 2년동안 취업 알선, 전세자금 · 생활보호금 등을 제공하며, ④북한에서의 학력이나 지위 · 자격면허 등을 일정범위내 인정하도록 함(통일원, 중앙일보사설 96.9.16, 6면).

※ 「입법의견조사」 제95-3호(83면) · 제96-1호(17면) · 제96-2호(21~22면) 참조

국 방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의견

■ 민간인통제선 범위 대폭 축소

- 통제구역내 주민들의 출입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20km 범위 안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15km이내로 축소하고, ②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경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③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보호구역내의 출입도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지역의 경우, 허가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당정, 한국 96.9.10, 3면).

■ 접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

-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남쪽 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업소 설립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가칭)』 제정과 관련하여 ①'카지노업소의 내국인 출입금지'를 규정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누구든지 출입이 자유로운 카지노업의 설립을 허용함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②『산림법』 적용제외 특례조항은 보전임지의 전용 허가·국유림의 개인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게 되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임(시민의신문 해설, 96.9.9, 5면; 한국 96.9.16, 3면).

※ 「입법의견조사」 제9호(88면)·제12호(72면)·제13호(50면) 참조

『병역법』 개정 의견

■ 산업기능 요원 복무기간 단축 추진

- ①대학재학생이 휴학해도 바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학교별 졸업제한연령(2년제 대학 22세, 4년제 대학 24세, 대학원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②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급의 대학·대학원에 편·입학한 경우와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입영연기제도를 적용하며, ③공익근무대상의 보충역 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도록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함(송재환 병무청장, 조선 96. 10.12, 2면).

■ 상근예비역 복무단축 재고

-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28개월을 현역병과 같이 26개월로 조정하고 기존의 현역 1년 복무기간을 폐지하여 6주 동안의 기초 군사교육 후 실무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지되었던 방위병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과 다른 없는 바, 현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단축안을 재검토하고, 현재 복무기간이나 조건에 있어서 현역근무자에 비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보충역제도의 경우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함(신한국당, 한겨레 96. 10.31, 3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 · 제3호(45~46면) · 제4호(25~26면) · 제7호(59면) · 제10호(75~76면) · 제11호(74면) · 제13호(52면) · 제 96-2호(22~23면) 참조

『통합방위법
(가칭)』 제
정의견

■ 중앙방위협의회 신설 지휘 일원화 추진

- 국가 비상사태시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방위법(가칭)』을 제정하여 통합방위 관련 기구의 법적 통제 및 지역 단위 통합방위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보장과 함께 간첩침투사건과 같은 종합적인 비정규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갖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방위협의회(가칭)'를 신설하도록 함(한국일보 해설, 96.9.21, 4면).

일반행정

『부패방지법
(가칭)』 제
정의견

■ 내부고발자 보호

- 대형 비리사건들의 대부분은 내부자의 양심선언으로 고발되어 졌고, 이로 인하여 내부 고발자들이 해직, 파면, 불명예 제대 등의 불이익을 당한 바, 이러한 모순을 제거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함(한겨레 기획·연재, 96.10.22, 4면).
 - 『내부고발자보호법(가칭)』의 제정으로 ①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고발의식을 고무시키고, ②사고시에 대비한 면책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③비리공개에 선행하여 그 시정을 위하여 최대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람에 한하여 보호한다는 단서를 필요로 함(박홍식 중앙대 교수, 『내부고발자 왜 보호돼야 하는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토론회·중앙대 국가정책 연구소 주최, 한겨레 96.10.22, 4면).
-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83~84면)·제95-1호(제84면)·제96-2호(24면) 참조

내무·지방행정

『경찰관직무
집행법』 개
정의견

■ ‘강력범 사살위주로 발사’ 법개정 추진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무기사용의 요건과 조건, 한계 등이 복잡하게 적시되어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정당성 여부의 논란이 있고, 경찰관의 범집행 과정에서 무기사용의 위축을 가져오는 바, 범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무기사용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요망됨(경찰청 방범국, 한겨레 96.9.6, 1면).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진흥재단 설립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법률을 통합·대체할 수 있는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함. ①민간운동 기본정책 및 단체지원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②민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 '민간운동진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배정·결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③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조성하되,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④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합법화 하고, ⑤민간운동단체가 소유하고 민간운동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정부이외의 자가 '민간운동진흥기금'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를 감면함(당정, 세계 96.11.27, 1면).

『서울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찬성론

서울이 사회·경제적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제도시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서울시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①조직·인사면에서 시공무원의 증원·조직단위 증설에 대한 자율결정권을 보유하고, 시장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내무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②재정면에서는 부담금·양여금·일반교부세지원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사업의 성격을 지닌 지하철 등의 건설비용을 상당부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③행정운영면에서는 시·구간 업무조정권을 갖도록 함(한겨레신문 기획·연재 96.6.27, 20면).

■ 반대론

서울에 특별법을 통한 별도의 권한부여시 지역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 바, 현행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

를』 등 자치단체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한겨레신문 기획·연재 96.6.27, 20면).

※ 「입법의견조사」 제95-3호(60~61면) 참조

『온천법』 개정의견

■ 물 온도 기준 상향조정

①‘지하에서 나오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온천물로 규정한 현행 『온천법』은 81년 제정 당시의 20~30m 굴착수준에 의하는 것임. 이곳의 평균 온도는 섭씨 15도로 25도 이상의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서 규정되었으나 지하 1백m마다 2.6도씩 온도가 상승하여 5백m에 이미 25도가 되어 1천m 이상의 굴착기술을 지닌 현재의 사정에는 상응하지 아니하므로, 온천물의 기준을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리고 선진국내 온천성분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하고, ②관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온천물 함유량 및 온도를 측정, 고갈을 방지하고 질 높은 온천물을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하며, ③온천지구내 토지 이용 개발, 시설물 설치 조항의 구체적인 명시없이 기업이 개발계획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④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된 허가권한을 세분화하여 온천 탐사는 시·도지사가, 발견 및 굴착, 이용관리는 보건사회부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하수보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서울·충주·부산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민의 신문 96.9.19, 5면).

전자주민카드 도입관련 입법의견

■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등 7개 분야 41개 정보를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①편의성에 비하여, 개인 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와 통제 가능성의 폐해가 막대하고, ②정부의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며, ③도입과 관련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근거 유무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추진은 중지되어야 함(김기중 변호사, 한겨레 96.10.7, 13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 교육감임명제 찬·반 논쟁

〈찬성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접목하여 지방자치의 행정범위 내에서 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자를 조화·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①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일원화하고, ②시·도회의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적격자의 교육감 진출을 막기 위하여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검증된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방어장치도 확보함으로써 교육감 선출시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도록 함(정영훈 신한국당 의원, 경향, 96.11.16, 4면).

〈반대론〉

-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시 여당단체장은 여당교육감을, 야당단체장은 야당교육감을 임명하게 되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정신으로 바람직할 것임(설훈 국회의원회의의원, 경향 96.11.16, 4면).

- 교육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여야성향의 교육감을 낳게 될 것인 바, 현행 선출방식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거

나, 주민직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조선일보 사설, 96.11.16, 3면).

※ 「입법의견조사」 제5호(49~50면) · 제96-1호(22~23면) 참조

『지방분권법
(가칭)』 제
정의견

■ 지방자치제의 체계적 실시 위한 지방분권법 제정
법 제도를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도록 정비하고, 『지방분권법
(가칭)』을 제정하여 ①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분권위원
회’를 두고, ②조직·인사·재정 등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③국
가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도모함(서울특별시, 한겨레
96.9.7, 2면).

『지방자치
법』 개정
의견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
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쟁의 해결장치로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
하고, 자치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권과 재정상의 조치권을 행사하게 하고, ②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총유권자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단체장에게 조례제정 등을 청구하면 단체장이 법안으로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회부하도록 함(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중
앙 96.6.13, 3면).

■ ‘조례개정 내무부 허가’ 위헌 소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에 대한 내무부의 통제와 관련한 『지방
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개폐에 관한 권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에 위배됨(인천시의회,
국민 96.8.7, 25면).

■ 정부의 지방자치규제
자기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자치행정권’은 대부

분이 국가통제 또는 규제를 받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바, ①국가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직책 임명, ②내부기구의 개편 규제, ③지방자치단체 인력정원 통제, ④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소요될 경비조달 제약, ④예산편성지침을 통한 간섭, 지방세 세목·세율의 일률적 적용 등과 같음(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중앙 96.6.28, 6면).

■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배제 등

①지방의회선거시 의원들은 지방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지방의원을 감원하고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교통 통신망의 발달·민원행정의 간소화·표준화·전산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행정계층구조를 시·군·구와 읍·면·동의 중간규모로 행정단위를 만들어 2단계로 축소해야 함(김안제 서울대 교수, 동아 96.7.6, 3면).

■ 『지방자치법개정안』 중 강제조정권 신설안 철회

현행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발생시 국무총리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이는 ①지방의 자율적 조정능력과 절차를 배제하고, ②지역·지역, 중앙정부·지역간 이해 충돌시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③타 자치단체와의 분쟁시 외부의 제3자가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강제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 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구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함(시민의 신문 해설, 96.9.23, 5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3~44면) · 제5호(49면) · 제10호(79~80면)
 · 제13호(57~58면) · 제94-2호(82~83면) · 제94-6호(85면) · 제95-
 2호(86~89면) · 제96-1호(23면) · 제96-2호(29~30면)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문제점〉

구 분	현 행	내무부 개정안	서울시안
분쟁조정 위원회	자치단체간 분쟁 때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 우 내무부장관 이 조정	자치단체간의 분쟁 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 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 내무부 분 쟁조정위원회 직권 으로 조정할 수 있음	내무부장관의 직권 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지방정부가 배 제된 채 중앙정부는 리에 의해 강제 조 정되어 자율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 분쟁조정 위설치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 하여 내무부장 관 또는 시도지 사 아래 분쟁조 정위원회를 둔 다	자치단체간 분쟁 조 정을 위하여 내무부 에 중앙분쟁조정위 원회를, 시도에 지 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운영의 공정성 효율 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 리산하에 조정위원 회를 두고, 시도간 의 분쟁만 중앙분쟁 조정위에서 심의하 고 시도 내부의 분 쟁은 협의회 등에서 자율 해결하도록 해 야한다
지자체와 내무부 합의	신설	중앙부처와 자치단 체의 의견조정이 필 요한 경우 내무부장 관과 협의를 거쳐 국 무총리에게 의견조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내무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부당함
행정협의 조정위신 설	신설	중앙정부와 자치단 체간 의견조정을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 의 행정협의조정위 원회를 둔다	수도권 광역행정조 정위원회가 구성되 어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협의조정위원 회 불필요함

단체장 구속· 체포	신설	자치단체장이 체포 및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장은 광역단체장에 대해 서는 내무부장관에 게, 기초단체장에 대 해서는 시도지사에 게 통지한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주는 것이 타당함
------------------	----	------------------------------------------------------------------------------------------------------	-------------------------------------------

(한겨레 96.9.18.5면)

■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필요여부
지방의원 신분규정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명예직'으로 변경된
바, 유급보좌관제가 불필요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유급보좌관
을 둘 경우 개인비서화하여 보좌의 전문성 제고라는 도입취지가
훼손되며, 의원당 유급보좌관의 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
비와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한국일보 기획·연재,
96.9.3, 6면).

문화 · 공보

『공연법』·
『영화진흥법』
개정 의견

■ 공연윤리위원회 존폐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위원회(공륜)를 사상과 의견을 사전에 검
열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라 하고 공륜의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결
정한 바, 공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제하에 계속 등급심의를
말도록 하려는 문체부안과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영화계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음(한겨
레 기획·연재, 96.10.8, 15면).

■ '공영예술진흥협의회'에 상영제한권 부여
- ① 공연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영

예술진흥협의회(가칭)'로 대체하고, ②이 심의기구에 정치적·풍속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상영등급 판정권한을 부여하고, ③등급은 △모든 연령 관람가 △12살 미만 관람불가 △15살 미만 관람불가 △18살 미만 관람불가 등급 외에 △12살 미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 관람가의 5등급으로 하고, 무삭제를 원칙으로 함. ③상영등급이 판정되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고, 이의 위반시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신한국당, 『영화진흥법 개정안』·『공연법 개정안』, 한겨레 96.11.23, 13면).

- 완전등급제의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음란, 폭력묘사가 문제시 되는 등급의 영화를 제한상영할 등급의 전용관을 설치하도록 함(한국영화연구소, 『영화진흥법 개정안』, 한겨레 96.11.23, 13면).

- ①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에도 등급기구의 판정에 따라서 상영을 못하게 하는 영화가 생긴다면 이는 명백하게 검열에 해당하고, ②민간기구라고 이름만 바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사실상 영화를 검열하여 등급의 영화의 발표 권리 자체를 원천봉쇄하면서, 제작자가 삭제할 것을 유도하는 것임. ③현재와 같은 영화배급구조의 난맥상은 '유통배급업' 개념의 도입으로 정리하고, 매체의 성격이 상이한 공연·음반·영상물의 심의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일원화하는 행정편의주의를 배제하도록 함(국민일보 기획·연재, 96.11.28, 20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6면)·제9호(97면)·제94-2호(92면)·제94-3호(97면)·제94-6호(91면) 참조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관광·숙박시설 건립 절차 완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효과적인 건축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각종 법안에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97년 1월 1일부터 시·도에 신설되는 사업심의위원회가

일괄처리하도록 하고, 관광호텔 건축시는 외국의 저리 상업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을 60~70%에서 80~90%로 높이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객실 2실당 1대에서 5실당 1대로 완화함(문화체육부, 96.6.12, 22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건

■ 문화행정의 제도적 결함 보완

문화행정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①문화재 감정·문화재 변경·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등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바, 이를 의결기구로 개편하고, ②문화재 행정의 중요성만큼 문화재관리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며, ③문화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특채를 시행하도록 함(한영우 서울대 교수, 한겨레 96.6.22, 10면).

※ 「입법익견조사」 제8호(82면)·제11호(84~85면)·제12호(80면)·제13호(63면)·제94-3호(95면)·제96-2호(31면) 참조

『방송법』 개정의 건

■ 방송의 독립성 확보

공정한 시장경쟁의 전제하에서 방송에 대한 탈규제정책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방송국의 허가·재허가권, 방송정책의 수립·집행을 담당할 독립된 방송총괄기구가 구성되도록 함(유재천 서강대 교수, 한겨레 96.6.26, 17면).

■ 『통합방송법(가칭)』 초안

①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10인의 국회추천인단의 추천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인과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②방송법인 허가와 관련하여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 일간신문과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방송법인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공중파방송법인의 소유지분을 10%로(특별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단체 설립 법인 제외), 종합유선 방송국의 경우는 15%로 제한하고, ③방송법인의 자체심의규정 승인과 읍부즈맨의 입면 등을 수행하는 시청자위원회(15인~30인)의 구성을 강제함(방송개혁국민회의 『방송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의 신문 96.7.8,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13호(64면) · 제94-1호(58~59면) · 제94-2호(89~90면) · 제94-4호(79~80면) · 제94-5호(100~101면) · 제95-4호(69~72면) · 제96-2호(31~32면) 참조

스크린쿼터
제관련 입법
의견

효과적인 영화정책을 위하여 스크린쿼터제를 구체화하여, ①공연신고서의 매표소 앞 게시, 1일전 공연신고, 개봉관에서의 동시 상영 금지 등을 의무화하고, ②신고는 자치단체 민원실이, 감독은 문화공보실이 하는 이중적 행정구조를 일원화하고, ③영화상영현황의 분기별 집계·공표, 매표·홍행부문의 전산화 및 홍행실사제의 도입을 고려함(정지영 감독, 시민의 신문 96.9.2, 5면).

『예술의전당
법(가칭)』
제정의견

■ 예술의 전당 특수 법인화
현행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예술의 전당을 특수법인화 하여 지위를 격상시키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예술의전당법(가칭)』을 제정하고 그 주요내용으로 ①예술의 전당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예술의 전당 기금의 설치와 정부출연과 개인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②필요한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③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문화체육부, 서울 96.8.6, 21면).

『음반및비디
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 비디오 등급심의도 영화와 같은 기준 적용
- 영화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매체이고, 비디오도 영화처럼 언론·출판의 한 범주인 바, 영화

의견

검열에 대한 위헌결정은 비디오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관련 악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겨레 96.10.12, 12면).

- 헌법재판소의 검열삭제가 성의 비하·성폭력의 당연시, 폭력미화 등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바, 과학적 기준으로 등급심의를 하고, 등급의 영화는 판매나 대여를 제한함이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일 것임(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실장, 한겨레 96.10.12, 12면).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93면) · 제95-2호(93~95면) · 제95-4호(73면) 참조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재벌의 언론소유 규제강화

재벌의 언론사 지배를 저지하고자 ①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언론사주식 취득상한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고, ②특정 재벌의 사실상의 언론사 소유를 제한하고자 주식취득 제한대상에 해당기업의 주주, 임원 및 관련재단을 포함시키고, ③주식소유자가 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3년 또는 5년의 경과기간을 두되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초과지분에 따른 언론사의 경영의결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함(박종용 신한국당 의원, 한국 96.9.13, 1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43~44면) · 제7호(62~63면) · 제8호(85면) · 제96-2호(33면) 참조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재

- ①매체의 유해정도를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②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물의 특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내리고, ③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문화체육부, 서울 96.9.5, 22면).

- 정부의 법안은 ①△유해물의 판금조치, △지정유해물의 표시와 포장 의무화, △점포 전시의 분리 격리, △자판기 사용금지, △유해물의 블랙리스트 고시, △심의회기관에 검사권, 조사권, 시정명령권, 행정심판권, 파기 또는 수거명령권 부여, △위반자의 체형과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고 강력하고, ②법안이 정하고 있는 유해기준도 애매하고, ③『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9~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법안이 18세로 규정하여 청소년보호정신에 위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함(이원홍 전 문화공보부장관, 한국 96.9.20, 24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78면) · 제95-4호(74~75면) 참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 의견

■ 방송광고공사 폐지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중과 방송(TV·라디오)사의 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도록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 제25조)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김홍신 민주당의원·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민의 신문 96.7.8, 10면).

■ 방송광고공사 존치론

광고시장의 통제·관리를 폐지하면 광고요금이 현실화되어 TV 광고료는 인상되는 반면에, 라디오광고료는 가격인하를 통한 광고의 유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방송사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임(김종락 기독교방송 광고국장, 시민의 신문 96.7.8, 10면).

■ 방송광고공사 축소론

공사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공익성을 높이거나, 공사를 폐지하더라도 광고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익자금으로 모으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한국 언론연구원, 시민의 신문 96.7.8, 10면).

교육 · 학술

『교육공무원법』 개정의견

■ 지방공무원직으로 전환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교육을 실현하고자 현재 교육직 국가공무원 신분인 초·중·고교 교사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교육부, 국민 96.6.20, 2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54면) · 제95-3호(65면) 참조

『교육법』 개정의견

■ 평생학습권의 도입 등

- 교육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 개념의 도입을 위하여 현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가칭)』, 『초·중등교육법(가칭)』, 『고등교육법(가칭)』 등 3개 법으로 분리하여 98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함. ①정식교육 범위를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확대하고, ②교육정보화·국제화 등 사회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③교육에 관한 자율의 폭을 확대하고, ④국민의 평생 열린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점인정제를 도입하고, 평가인증기관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⑤정보통신기술의 교육에의 활용 등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⑥국내 거주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권을 부여함을 주요골자로 함(교육부, 중앙 96.6.15, 21면).

- ①『교육기본법(가칭)』은 교육에 관한 ‘평생학습권’ 등의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 지원·장려 등과 같은 책무를 규정하고, ②『초·중등교육법(가칭)』에는 ‘의무교육’장과 ‘학교자치’장 등을 신설함. 학생징계시 의견진술 등 변론기회를 주도록 하고, 산학겸임교사·현장실습교사제를 도입하며, 초·중·고의 통합운영을 꾀함. ③『고등교육법(가칭)』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설립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립을 인가해 주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세계 96.7.20, 29면).

※ 「입법의견조사」 제7호(61면) · 제8호(76면) · 제10호(82~83면) · 제11호(81면) · 제12호(78면) · 제94-1호(54~55면) · 제95-4호(65~67면) · 제96-1호(25면) 참조

『사학육성법
(가칭)』 제
정의견

■ 사학정책심의회 설치 · 학교 통합운영 방안 등
사학 육성과 관련한 기본적 사항을 두루 규정하여서, 교육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학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①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구축과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②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사학정책의 수립 · 시행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 · 도에 사학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함(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주최 『교육개혁과 사립학교법』 세미나).

『서울대법
(가칭)』 제
정의견

■ 서울대 자치권조항 신설
기존 『서울대법안』의 “서울대학교는 국무총리의 관할아래에 둔다”는 2조를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의 신설과, ‘자치권’과 관련하여 학생정원과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서울대, 국민 96.6.14, 27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92면) 참조

신 직업교육
체제마련을
위한 입법
의견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
-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①직업교육훈련기관 · 학생 · 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②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

등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이상인 인제대 교수,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주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 보고서, 서울 96.7.4, 10면).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적자산의 지식이나 기술의 질적 수준 등 교육정보와 노동시장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중앙독립기구로 노동시장의 중앙은행과도 같은 '직업능력 개발원(약칭 직능원)'을 설립하도록 함(이종훈 명지대 교수,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주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 보고서, 서울 96.7.4, 10면).
- 학력 위주 채용의 한계와 인적자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지표의 부재로 공신력있는 자격제도가 요망되는 바, 『자격기본법(가칭)』을 제정하도록 함(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교육개혁추진기획단 주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방안 공청회』 보고서, 서울 96.7.4, 10면).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②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③산업현장의 경험, 사내대학, 기능대학, 사설학원에서 이수한 교육도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교육부, 동아 96.9.5, 43면).

■ 자격기본법 제정

①일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②국가 외에 민간단체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시 전형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③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학·컴퓨터 등 기초소양을 평가하여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는 '직업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함(교육부, 동아 96.9.5, 43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을 설치하고, 직능원은 ①△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연구 개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격증과 학점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업무를 맡고, ②자격증 발급 등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운영내용을 직능원으로부터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③직능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함(교육부, 동아 96.9.5, 43면).

노 동

『근로기준법』 개정 의견

■ 원직복직을 위한 입법조치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그 실효성 담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바,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현재의 법 제도로는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원직 복직을 바라는 데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에게 임금만 주고 복직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부당해고자의 원직복귀 확보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노동 인격의 법적 원리를 존중하였을 뿐이므로, 노동향유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한겨레신문 사설, 96.9.7, 2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74~75면) · 제95-1호(85면)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의견

■ 남녀고용평등 지향

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은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정책을 지양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는 한편, 법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용할당제

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국민 96.11.27, 23면).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86면)·제95-3호(88~89면) 참조

노사관계개
혁관련 입법
의견

■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

- 재정경제원의 경제운영계획인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방침과 관련하여서 ①변형근로시간제는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44시간) 범위 안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근로자 삶의 질을 격하시키고, 연장근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②정리해고제도 사용자의 남용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노동생산성만 저하시킬 수 있음(노동계, 경향 96.7.4, 3면).
- ①변형근로시간제는 우리의 노동현실하에서는 임금감소·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산업재해 유발 등을 초래할 수 있음. ②현행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고용 안정, 문화적 생활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휴가제도는 다소 보완하여 개정하며, ③복수노조금지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급단체 및 단위사업장 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함(정길오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제1차 공개토론회』, 세계 96.7.17, 29면).
-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 3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재계, 경향 96.7.4, 3면).
-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고용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임(경총, 경향 96.7.4, 3면).
-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생존확보를 위한 정리해고제 도입은 불가피한 조처임(전경련, 경향 96.7.4, 3면).

- 노사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는 바,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법정근로시간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변형근로시간제나 단기고용인력 공급업체를 허용하는 근로자과건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함. 다만, 제도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나 노사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경향신문 사설, 96.7.4, 3면).
- ①노동자의 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4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정리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정리해고수당으로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해고예고기간은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③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노사협의회법』은 폐지되어야 함.
- ①사용자의 정리해고가 해고사유나 절차에서 정당성을 결여하면 그는 당연무효로 간주되고, ②해고예고기간은 근속연수 5년 이상으로 만 30~40세는 60일, 40세 이상인 근로자는 90일로 차등화함(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
- ※ 「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 제2호(45면) · 제5호(50면) · 제6호(76면) · 제7호(61면) · 제8호(78면) · 제9호(94면) · 제12호(79면) · 제94-1호(57~58면) · 제94-2호(89면) · 제94-3호(93면) · 제94-4호(79면) · 제94-5호(99~100면) · 제94-6호(86~87면) · 제95-1호(85~86면) 참조

〈노동법 개정 주요쟁점 논의현황〉

쟁점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안(주로 공익 위원안 임)	노동계 입장	경영계 입장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 제로 복수노조 전면 허용. 경과규정을 두 어 일정기간동안 상 급단체만 허용, 회 사측이 전임자 급여 를 지급 않음. 5년 동안 유예	전임자 급여지급금 지 반대. 노총은 단 위 노조까지, 민주 노총은 상급단체만 허용도 수용	전임자 급여 지급반 대. 상급단체허용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제3차 개입 금지	현행 규정 삭제. 단 위법정의행위 선동 조종 참가는 금지	완전 삭제	이념운동가, 불법단 체의 관여는 금지
공무 원교 원의 단결 권	노동조합명칭 대신 「직원단체」로 단결 권 인정하고 교섭권 은 체결권이 아닌 협의권으로만 인정 하자는 1안과 공무 원은 제2차 제도개 혁과제로 넘기고 교 원은 교총을 복수화 하자는 2안	「노동조합」명칭 고 수.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요구. 단결권 과 교섭권 요구	공무원 노조는 시기 상조, 교원노조는 1안 지지
정리 해고	근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 회피노력, 대상 자 공정선정, 노조 와 협의 전제로 근 로기준법에 명문화	고용불안 등으로 반 대. 도입할 경우 노 조와의 합의요구	정리해고 사유에 기 술상의 이유도 포함 요구
변형 근로	2주단위 변형근로 (주48시간 근로, 12 시간 연장근로)를 원 칙으로 노사협정에 의해 1개월단위(주 56시간 12시간 연 장근로)도입	내년 주4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현재 44시간) 단축, 2000 년 주40시간으로 단 축을 조건으로 수용	소위안에 동의. 근 로시간단축 별도 논 의

파견 근로	파견대상업무, 기간, 파견근로자의 조합 활동 등 심도있는 논의 필요	법조문화 필요 인정 하나 강한 거부감	변형근로·정리해 고와 연계. 실익이 없어 유보하자는 입 장
----------	------------------------------------------------	-------------------------	-------------------------------------------

(한국 96.9.20, 6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복수 노조	· 기업·산업단위 등에서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	·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허용 ·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 하여 2002년부터 시행
제3자 개입 금지	· 노사당사자 이외의 법 적권한 없는 제3자가 단 체교섭, 쟁의행위 등을 조종·선동·방해·기 타 개입하는 것을 금지	·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 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 1. 노사의 상급단체 2.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 에 신고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 한을 가진 자 ·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 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 쟁의기간중 '쟁의와 관 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 -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 의 대체는 허용 - 신규하도급은 금지	·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 유니언 슝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 신규하도급(외주)허용
공익 사업 의 범위	· 공중운수사업 ·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은행사업 · 방송·통신사업	·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 · 석유공급사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은행 및 조폐사업 · 방송·통신사업

직권 중재의 대상	· 모든 공익사업이 해당	· 공익사업 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에 한정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유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금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인정
노조 정치활동	·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 지지, 정치자금 징수, 조합기금의 정치자금유용금지	· 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 ·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 발생신고후 냉각기간동안 알선·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 · 냉각기간동안 쟁의행위 금지 · 냉각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 전치제도) ·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 노조운영비의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해석론에 맡겨짐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 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쟁의 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 수를 행정지도하여 왔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 · 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 · 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 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 · 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노조 대표 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 명시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 - 해석상으로 노조대표 · 자의 단체협약 체결 · 권을 인정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 에 관한 다툼이 분규의 ·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 · 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 · 과 함께 단체 협약 체결권을 가 · 지는 것으로 명시함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 · 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 서는 아니됨을 명시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 · 력을 갖도록 함
교원 의 단결 권등 문제	· 노동 3권은 인정되지 · 않음 · 다만 교원의 지휘향상 · 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 · 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 · 위향상을 위한 교원단 · 체 결성(교총)과 교섭 · 협의권 인정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개정 ·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 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 교섭협의를사항과 제의사항을 명 · 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 쟁의행위는 금지 · 시행시기 : 99년부터
공무 원의 노동 권	·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사 ·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 현업공무원에게만 노동 · 3권 인정	· 현행유지 · - 2차 개혁과제 검토
탄력 적 근 로 시 간 제	· 규정 없음	·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 · 을 한도로 2주단위 탄력적 근로 · 시간제 도입
근로 시간 계산	· 규정 없음 · 출장 기타 사업장외근 · 로시 1일 8시간 근로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의 특례	것으로 봄(시행령 제37조)	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재량근로시간제)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시간제)
경영 상의 이유 에 의한 해고	·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 및 행정지침에 따라 규율	· 요건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에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노력
최저취 업연령	· 최저취업연령은 13세임	·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연· 월차 유급 휴가	· 월차유급휴가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 연차유급휴가 -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 계속근로연수 1년에 1일 추가 - 20일 초과일수 통상 임금대체 가능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 연차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상한제) - 노사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에 같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경향 96.12.4, 6면)

『시간제고용
촉진법(가
칭)』 제정의
견

■ 시간제 인력은행 설치

미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직업 조직 안의 직업내용이 변화하면서 시간제 직업(파트타임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바, 『시간제고용 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시간제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채용제도를 마련하며, 시간제 직업근무 중 업무상·공무상 당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보수의 체불·횡령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규제를 마련하여야 함(김농주 직업평론가, 한겨레 96.11.28, 23면).

『외국인근로
자고용법(가
칭)』 제정의
견

■ 법제정의 부작용

①노동부가 문제시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대부분이 산업기술 연수생 신분이 아닌 관광비자로 들어온 단기체류자인 바,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가칭)』이 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불법취업이 양산되고, 고용주는 고용분담금의 회피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고용할 우려가 있음. ②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상여금·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을 추가지급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여 외국인 고용의 근본적인 이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중소기업청, 국민 96.10.23, 9면).

※ 「입법의견조사」 제95-1호(87~88면)·제95-2호(93면)·제95-3호(90~91면)·제95-4호(72~73면)·제96-1호(29면)·제96-2호(43~44면) 참조

재정·경제

경제 행정의
투명성제고
관련 입법

■ 투명성제고의 원칙 마련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①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없는 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②불투명한 용어를 구체화하며, ③신

의견

고제의 부당한 심사수리를 개선하고, ④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근거를 마련하며, ⑤규제기준을 상위 법령화하는 등의 5가지 투명성제고의 원칙을 마련함(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서울 96.7.25, 9면).

■ 감사제도의 강화

①감사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감사의 선임·해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이하로 제한하여 온 바, 그 제한 대상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지분까지로 확대하고, ②감사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상장법인 근무 5년이상 등 전문성요건과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감사취임을 제한하는 독립성 요건을 두고, ③외부감사인을 선·해임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제청하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이 감사내용을 상호통보하도록 의무화함. ④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바,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⑤지정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의 기준을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지분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낮추며, ⑥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과다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을 자기자본의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 낮추되 대상에 특수관계인을, 종류에 담보 제공과 지급보증을 추가함(한국 96.8.31, 1면).

『금융기관합 병및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금융기관의 합병간소화

①현행 『상법』은 금융회사들이 합병할 경우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특별결의(전체지분의 3분의 2이상 찬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의 추후 승인시 경영진의 우선 합의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도 부실경영 등으로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부도난 금융회사가 파산되지 않고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액예금자와 함께 고액예금자도 예금 전액에 대

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세계 96.6.16, 1면).

※ 「입법의견조사」 제10호(92~93면) · 제11호(87면) 참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 구조개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금융기관을 ① 재정경제원장관·예금보험기구(예금보험공사·보험보증기금·신용관리기금 등)의 정상경영불가 판단 하에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자본금 증액이나 주식 처분 등 자체정상화를 도모하고, ② 자체정상화의 애로시 합병·영업권 양도·제3자 인수 등을 권고(재정경제원) 또는 알선(예금보험기구)하고 이의 수용거부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함. ③ 강제 합병·인수되는 금융기관에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합병·인수 1년 안에 근로자들을 전직·휴직·해고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원, 경향 96.10.3, 1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검찰의 전속고발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범의 근절을 위한 검찰의 자유로운 수사를 위하여 폐지되어야 함(검찰, 서울 96.7.15, 9면).
- 정부조달공사의 입찰담합·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96.7.15, 9면).
-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만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한 '독점고발권'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소비자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단체도 문제기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사업체의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3배 상당액으로 하여 소비자권리를 보장하도록 함(김

영선 신한국당의원, 동아 96.8.12, 4면).

- 검찰과 공정위의 침해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속고발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고발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차관회의, 법률신문 96.11.14, 5면).

■ 재벌의 부당거래 규제범위 확대

신재벌정책의 방향에 따라 재벌그룹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예외분야 및 예외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인하여 채무보증제한제도를 강화하고, ②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의 인수·합병과 위장계열사를 통한 탈법·변칙 기업결합에 대한 감사 강화 등 기업결합제도를 정비하도록 함(당정, 서울 96.6.17, 2면).

■ 각 부처 경쟁제한내용 법령 제·개정때 공정위와 사전협의 의무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제·개정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드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제처는 경쟁제한관련 법령안 심사시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없이 행한 경쟁제한적인 처분이나 승인은 사후시정이 가능하도록 함(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 96.6.26, 9면).

■ 법률상의 위헌소지

- ①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경제력 집중', '경제력 집중억제' 등의 모호한 표제하에 도입된 지주회사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

총액제한 등의 규제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②기업집단의 총자산규모 상위 30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총자산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예측가능성 확보면에서 위헌이며, ③상호출자 제한의 경우는 『상법』적 차원에서 사법적 수단으로 규제될 문제이지 공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며, 이상에서 규제의 타당근거가 없고, ④출자총액제한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억제하여 경제자유주의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므로 위헌임(이철송 한양대 교수,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 요소검색」, 『경제법령의 선진화 과제』 전경련 심포지엄 주제발표문, 세계 96.6.20, 9면).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개정안과 관련하여 ①계열사 빚보증 정리,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등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행사나 주주의 공익권에 대한 침해이고, 상호채무보증의 신용창출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②'친족독립경영회사'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 분야의 진출시 무엇이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의 위헌요소가 배제되어야 하고, ③자유로운 시장진입·시장자율기능의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의 철폐가 선행되어야 함(경향신문 사설, 96.8.8, 3면).

■ 불공정거래 '긴급 정지령' 도입

- ①공정거래 위반기업의 시정명령 불응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긴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②카르텔(담합) 규제를 위해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하며, ③공공조달사업의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시·적발 체제 확립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④기존사업자들이 자기업종의 신규진입을 막는 행위를 제재하고, ⑤담합행위를 최초로 자진 신고한 회사나 재벌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⑥『표시·광고등의공정화법(가칭)』을 제정하여 경품제고, 할인판매 등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의 포괄적인 규제와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세계화추진위원회, 조선 96.6.30, 2면).

■ 금융·보험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심결전에 중지하도록 하는 긴급중지명령제도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 매기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②계열사간 채무보증비율을 2001년 3월말까지는 완전해소하고, ③불공정 거래 행위, 판매가격 강요행위, 불공정 국제계약 등에 대한 형벌(최고 징역 2년)은 폐지하되, 과징금은 매출액의 2%에서 3%로 부과함. 계열사의 분리·경영을 꾀하는 재벌 친·인척들에게 분리기준을 명시하여 기준에 맞으면 '친족독립경영회사'로 분류, 계열분리를 인정하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 중앙 96.8.7, 1면).

■ 재벌 생명보험회사 소유제한 철폐
15대 재벌의 생명보험사 신규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인 제도이므로 철폐하여야 하고, 재정경제원이 지침·내부규정 등 근거가 불분명한 형태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공정경쟁원칙의 위반으로 규제는 최소한 부령 이상의 형식으로 되어야 함(공정거래위원회, 조선 96.9.2, 11면).

■ 계열사 인력 지원도 제재
재벌 계열사간의 인력지원 행위에 대하여 법적제재 근거가 없어온 바, '부당하게 동일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 재벌이 다른 계열사의 인력을 지원했을 경우
 우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일 경우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함(경제차관회의, 한겨레 96.10.31, 1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7~48면) · 제3호(61~63면) · 제94-5호
 (107면) · 제96-1호(32면) · 제96-2호(52~53면) 참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관련 각계 의견안 비교〉

	공정위	전경련	경실련
친족독 립경영 회사제 도의 도입	재벌의 친족이 경 영하는 분가회사나 위성재벌 등에 대 해 계열분리를 유도 하되, 친족회사간에 부당내부거래를 금 지하고 위장분리여 부에 대해서는 조 사를 강화해야 함.	지나친 규제지향적 사고임. 현재의 계 열판정기준인 특수 관계인의 범위만 핵 가족화 시대에 맞게 축소·조정하면 될 사항임.	소유와 경영이 분 리된 전문경영인체 제로 친족독립경영 회사 제도도입 바람 직함.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재벌에 대한 규제회피 목적 으로 악용되지 않도 록 기준 및 사후대 책 강구해야 함.
경쟁제 한적 혼 합결합 에 대한 심사강 화	대기업이 기업결합 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 제 미흡. 중소기업 들이 합해 2/3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분야에 대규모 회사(자산 총액 또는 5천억원 내지 1조원:대통령 령으로 규정계획)가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 경 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 을 단계적으로 축 소해 나가는 기존 정부정책과 배치됨. 이 규제를 외국기 업에도 적용한다면 통상마찰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 리나라 대기업에만 적용한다면 우리기 업에 대한 역차별 이 될 것임.	중소기업이 담당해 야 할 영역을 무차 별적으로 침투해 시장지배력을 형성 하는 혼합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입증책임을 대기 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은 재벌의 무분별하고 교묘한 확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위 금지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종전의 상품과 용역뿐만 아니라 주식·부동산 등 자산이나 자본까지 확대	법인세법의 부당계산행위 부인규정에 자산 및 자금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임.	공정위안에 찬성. 특히 재벌그룹 계열사간 인력 파견, 그룹 비서실·기획조정실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부당한 인력거래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에 포함해야 함.
긴급중지명령 제도입	경쟁제한·부당성의 우려가 있어 법위반의 혐의가 있고, 일정기간 경과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 등으로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자 사법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 거래의 불안정을 극대화해 거래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큼.	긴급중지명령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갖춰져 있는데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위상에 비춰볼 때 사법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의 축소	금융·보험사업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및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보험업만 예외로 인정해 제외할 게 아니라 제조업여타 기업집단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도록 함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 취지에 부합함.	재벌그룹들이 계열금융·보험회사를 이용해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의 적용범위 확대	일정규모(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백억원) 이상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만을 금지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소규모회사의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	규제의 실효·적정성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 규제대상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자본금 30억원, 또는 자산총액 1백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벌그룹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동원해 무분별한 기업결합으로 재벌구조를 고착화하고 확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

	<p>는 규제하기 힘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p>	<p>방안 검토.</p>	
<p>채무보증 제한 제도 강화</p>	<p>재벌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98년 3월말까지 1백%로 축소하고, 2001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방침.</p>	<p>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채무보증규제는 고유목적과 취지에 비취완화하거나 철폐되어야 할 규제임. 오히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고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임.</p>	<p>상호출자와 더불어 재벌가문의 기업집단구축 수단이 되어 온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재벌의 금융독식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전면 금지되어야 함.</p>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 20% → 10%로 인하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3% 상향 조정 · 부당공동행위 신고나 면책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기업의 합리적 결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큼. · 과징금을 매출액의 2%에서 3%로 조정함은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현행 2% 존속. · 기존 법령 탄력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현행 20%보다 계속 낮아져야 함. · '몇% 이하'보다 '몇% 이상'이라는 형식을 도입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벌하여야 함. · 신고없이 적발하기는 힘든 점을 감안, 도입하는 게 바람직.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제2조)에 언론사를 포함시켜야 함. ·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제도 개선하여야 함.

(시민의 신문 96.9.2, 3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적용 확대	경쟁제한적 법령·처분의 협의제도 개선	- 사전협의 대상 법령 범위 명료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	- 모든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의 축소	- 법적용 제외 조항 삭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기업결합 제한 대상의 규모기준 삭제
경쟁력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 제고	채무보증제한제도 강화	- 96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 2001년 3월까지 완전해소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 자산, 자금 등의 부당 내부거래도 금지
	독과점 개선 시책 추진의 근거마련	- 선언적 조항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에 의견 제시 또는 조치 요청
기업결합제한제도 정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 심사 강화	-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 2/3이상인 분야에 대규모회사가 M&A 통하여 진출시 경쟁저해로 규정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비율	- 상장법인의 경우: 20% → 10%
각종 벌칙조항 축소 및 기타 규제 조항 개선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강화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사업자단체 규제강화 등	

법위반행위 시정 강화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소위원회제도 도입 등

『상속세법』
개정 의견

■ 재벌 변칙증여·상속 제재/ 포괄주의로 법개정 검토
저가주식 양도와 보험금 증여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의 증여세 과세조항을 ‘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변칙증여를 방지함(차수명 신한국당 의원, 한겨레 96.11.12, 5면).

■ 지난 8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와 참여민주사회시민단체의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동아 96.10.27, 5면).

	정부안	국민공청회안	시민연대안
배우자 상속세	· 면세점 10억원 공제한도 30억원	· 면세점 5억원 공제한도 20억원 · 결혼기간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 범위안에서 전액 비과세	· 면세점 5억원
최고세율 및 과세구간	1억원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이상 40%	1억원이하 10% 1억~4억원 20% 4억~8억원 30% 8억~10억원 40% 10억원이상 50%	과세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60%로 인상
지배주식상속시 할증평가율	10%	· 20% · 아예 폐지	

■ 상속세법 개정안
중산층과 여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①상속·증

여세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②배우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전액 공제해주고, ③인적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 대신 5억원까지는 면세하는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함.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는 ①공익법인에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고, ②공익법인 임원은 물론 출연자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면세한 증여세를 추징하고, ③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고액재산가의 배우자,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인별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상속세 탈루를 방지함(재정경제원, 조선 96.8.2, 1면).

■ 면세기준 10억원 타당성 의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통합하여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현행 상속 5억5천만원 초과분, 증여 3억원 초과분)를 10억원 초과로 높이고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서 10억원을 상속받든지, 1백억원을 상속받든지 일률적으로 40%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상속세법개정안』은, 부의 세습억제나 부의 분산 촉진 효과가 별로 없고, 국민정서상 10억원을 중산층기준으로 잡은 것도 수긍하기 어려움. 배우자 공제 확대는 재산이 부부공동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는 있으나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시민의 시문 96.8.12, 11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83~84면) · 제8호(93~94면) · 제9호(101면) · 제12호(87면) · 제95-1호(91면) · 제96-2호(48~49면) 참조

■ 세법개정안 요약표

주요항목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 공제	· 400만원이하:전액 · 400만원초과:30% · 공제한도:800만원	· 500만원이하:전액 · 500만원초과:30% · 공제한도:연 900만원

근소세 경감	근로소득 세액 공제 (전 근로 자 대상)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초과: 20% · 공제한도: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초과: 30% · 공제한도:60만원
	면세점 (연 소득 기준)	· 1인가족:771만원 (월64만원) · 2인가족:842만원 (월70만원) · 3인가족:914만원 (월76만원) · 4인가족:1,057만원 (월88만원)	· 871만원(월72만원) · 942만원(월78만원) · 1,014만원(월84만원) · 1,157만원(월96만원)
	그밖에 바뀌지 않은 주 요사항	· 소득세율 - 1,000만원이하:10% - 4,000만원이하:20% - 8,000만원이하:30% - 8,000만원초과:40%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1인공제자: 연 100만원 - 2인공제자: 연 50만원 · 인적공제 - 기초공제:연 100만원 - 배우자공제: 연 100만원 -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저축증 대 및 소비절 약유도	가계장기 저축(신 설)	·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1가구 1통장 - 월불입액 100만원 한도 - 적립식 저축 - 저축기간:3년 - 취급기관: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 98년 12월말 이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근로자주 식저축 (신설)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5%를 세액 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 투자대상: 주식 - 저축한도: 월급여의 30%(총납입액 1,000만원 한도) - 저축기간: 일시납은 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분할납입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치 - 취급기관: 증권회사 - 97년 12월말 이전 불입분까지 한시적용 - 농특세도 비과세		
저축증 대 및 소비절 약유도	기업접대 비손금한 도(축소) * 한도는 ①+② +③	①기초금액: 2,400만원 ②자기자본(50억한도): 2% ③매출액 1백억원이하: 0.3% 1백억~1천억: 0.2% 1천억초과: 0.1%	①현행유지 ②자기자본(50억한도) × 2% (중소기업) × 1%(대기업) ③매출액 1백억원이하: 0.3% 1백억~5백억: 0.2% 5백억초과: 0.1%

(경향 96.8.29, 3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가칭)』 제
 정의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이용 시설사업 및 환경보호, 우리농산물살리기 등의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장이 전무하고, 설립근거법이 없어서 임의조합 형태의 공신력 없는 단체활동에 머물러 온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시민의 신문 칼럼, 96.8.26, 12면).

소비자정책
 관련 입법의
 견

■ 소비자정책 공청회

①의료·법률·금융 및 공공서비스분야 등 전문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업자 단체나 감독기관이 피해구제기관으로 되어 왔으나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

고 절차는 간소화함. ②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③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생산업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PL법)를 도입하며, ④수입농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대상국에 대한 파견검사제도를 도입함(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 공청회』, 중앙 96.6.22, 40면).

■ 소비자안전 확보

리콜제도의 해당품목을 확대하고 긴급한 위해제품 제거를 위한 긴급명령제도를 실시하며, 소비자안전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안전법(가칭)』을 제정하여 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마크의 미부착 시 제품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 공청회』, 중앙 96.6.22, 40면).

■ 소비자피해구제 확충

소비자보호원에서만 실시하는 소비자소송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하도록 함(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 공청회』, 중앙 96.6.22, 40면).

예산제도 개
선관련 입법
의견

■ 공공부문 생산성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①우리나라의 경상경비 관련제도는 이월에 제약이 많고, 경비가 남으면 다음해의 예산삭감요소가 되는 등 경상경비 절약에 애로 사항이 있는 바, 경상경비지출의 주체에게 더 많은 신축성 및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체 판단으로 효율적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증가율 위주의 편성 및 계속사업비의 지속적 증대가 불가피하므로 예산편성시 향후 수년간의 예산추정치를 같이 제시하고 이같은 추정치가 구속력을 갖는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③지방재정조정제도는 법정교부

세율의 가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부금 배분방안 확보, 영세보조금의 통폐합 등의 개편이 요구됨. ④각 부처의 수입증대 유인 및 예산운영의 자율권 증대를 위하여 각 부처당 자체 수입의 일부를 해당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수입유보권의 허용을 고려함(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공공부문 생산성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엄).

『외자도입법』 개정 의견

■ 외자도입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편의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법률 개정함(한국경제 96. 8.23, 4면).

〈외자도입법 개정안〉

내 용	현 행	개 정
관련법 이름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법률
투자절차	49개 부분개방업종은 인가제	신고제로 간소화
M&A 허용	투자기업을 신설하거나 국내기업의 신주(新株)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	국내기업의 구주(舊株)취득도 포함, 우호적 M&A 허용. 단,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허가절차필요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등 대폭감면	동일. 단, 내국인소유의 구주취득때는 감면혜택 없음
차관도입	불허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이상 장기차관을 들여올 때 시설 재도입용에 한해 허용, 99년 이후 용도제한폐지
공단 입주비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시 분양 및 임대료 할인	일정기준을 갖춘 외국투자기업에는 국가 소유공단에 20년까지 무상입주

조세감면 신청기간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2년이내로 연장
공장설립 절차	서류제출후 45일 이내 자동 승인가주	30일로 단축
법인전환 절차	국내지점 폐쇄하고 현지법인 으로 전환시 청산대금 및 해 외송금후 제도입절차 필요	청산재산을 투자자산으로 인 정, 불필요한 재도입절차 폐 지

※ 「입법의견조사」 제10호(91면) · 제13호(72면) 참조

『한국은행
법』 개정
의견

■ 한국은행법 개정안

- 지난 87년부터 제기된 중앙은행의 독립과 관련하여, 95년 재정경제원 출범 후 신한국당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으로 각계의 논쟁이 촉발되었는바, 그 골자는 ①현행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을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재정경제원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하며, ②재정경제원 차관이 당연직 금융통화운영위원이 되고 정부 추천 위원을 전체의 2/3인 6명으로 하며, ③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고, 은행·보험·증권·분야의 세 감독원을 신설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함(「다시 달아오르는 한국은행법 개정 공방」, 참여사회 96/11·12, 45면).
- ①금융통화위원장의 한국은행장 겸직은 한국은행을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 산하 집행기구로 격하시켜 현재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②정부 추천 금융통화위원을 6명으로 정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③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시키어 재정경제원 산하 금융감독원으로 재편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게 되어 한국은행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는 재정경제원이 금융 전 분야에 대한 단일 지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임(경실

련, 「다시 돌아오르는 한국은행법 개정 공방」, 참여사회 96/11·12, 45면).

※ 「입법의견조사」 제8호(101면)·제94-5호(117면)·제94-6호(102면)·제95-1호(93면)·제95-2호(105~108면)·제95-4호(82면)·제96-1호(35면) 참조

통상·산업

『국책사업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개별 사업별 각각 제정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책사업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국책사업에대한특별법(가칭)』을 『경부고속철도건설특별법(가칭)』, 『부산가덕도신항만건설특별법(가칭)』 및 『광양·아산항건설특별법(가칭)』과 같이 포괄적인 법이 아닌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제정하기로 함(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서울 96.6.22, 9면).

영세소규모 기업지원관 련 입법의견

■ 공장입지 규제 대폭 완화

- 영세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하여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①비공업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현지 근린공장의 업종범위를 편직·봉재·단순가공조립업체 등까지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재봉·재단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 건설은 허용하기로 함. ②『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면적 규제대상에 묶여있던 2백m²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에 대한 건립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도록 함(당정, 동아 96.6.11, 10면).
- 건설교통부 고시로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형 공장은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영세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므로 준공업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여 초고층 공장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박

- 종옥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서울 96.6.11, 6면).
- 중앙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소기업들은 담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의 재정자금을 상업어음할인 재원으로 추가배정하도록 함(이태수 부산광역시 지역경제국장, 서울 96.6.11, 6면).
- 영세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도록 함(김기무 대구광역시 산업국장, 서울 96.6.11, 6면).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영세기업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을 배정하고 연수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함(황준기 경기도 산업경제국장, 서울 96.6.11, 6면).

『유통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의견

■ 대형점포 개설 등록제 전환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국내진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통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하여 『유통산업발전법(가칭)』을 마련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함(통상산업부, 한국 96.9.7, 8면).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 제조자가 무결함 입증해야 면책

『제조물책임법(가칭)』상의 ①'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부동산 중 분양공급주택을 말하고, ②'제조자'의 범주에 수입업자도 포함하며, ③해당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표시·경고 등 표시사항, 유통시기 등도 결함의 대상에 포함하고, ④제조물 결함여부에 관한举证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자가 갖도록 하는데 이에 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제조물 유통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부품제조자의 경우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 있으며, ⑤소멸시효 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부터 3년·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함(소비자보호원, 조선 96.9.5, 13면).

※ 「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2~103면)·제95-4호(81면)·제96-1호(38면) 참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 단체수의계약관련 규정 보완

단체수의계약 관련 특혜 배정의 발생시 관련자 처벌, 해당 조합의 물품배정 제한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가 없어서 비리가 계속되는 바, 법개정을 통하여 ①'균등한 수혜'에서 '공정한 수혜'로 원칙을 전환하여 생산능력·품질·기술수준이 우위한 기업에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이 배정되도록 하고, ②관련법규와의 상이한 규정으로 애로가 있는 재정경제원의 회계준칙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함(시민의 신문 해설, 96.9.16, 3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①대금 미지급 등의 일반적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정조치 불이행이나 허위감정 이외의 범위반시에 부과해 오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억원의 벌금 등)을 폐지함.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원도급업자의 요건인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건설업은 30억원 미만), 상시고용종업원수 20명 미만(건설업은 30명 미만) 중에서 상시 종업원수 기준은 폐지함.

※ 「입법의견조사」 제1호(48면)·제94-2호(102면)·제94-6호(101면) 참조

농림 · 수산

수매제도관련 입법의견

■ 쌀 약정수매제로 개편

①현재 쌀의 수확기에 값을 정하여 정가로 사들이는 수매제도를 파종전에 정부와 농가가 값을 정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방식의 약정수매제로 개편하고, ②고령농가의 세대교체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선진국형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3년 이상 벼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가가 5~20ha의 대규모 농사를 짓는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며, ③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서는 수매약정량 배정·직불제 시행·영농자금 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되, 농지전용시 물리는 농지조성비는 논인 상태에 따라 차등화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함(농정개혁 추진회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세계 96.6.15, 1면).

『수의사법』 개정의견

■ 허위진단서 발급 수의 형사처벌

현행 법규상 수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벌인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수의사법』 제41조 뿐인 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법무부, 96.6.28, 29면).

『연안역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연안역 통합관리제 구축

- 연안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개발을 위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여 ①어업, 해상운송, 간척·매립,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연안역을 사회·경제·환경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 용도구역별로 이용·보존방안을 마련하고, ②권역별 보유자원, 이용상태 및 환경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97년까지 실시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해양수산부, 세계 96.10.10, 10면).

- 연안역의 사적인 이용을 공공적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인
· 허가, 면허 등 행정규제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방식에서 탈피
하여 연안역의 이용용도와 허용의 범위를 사전에 예고하는 용
도지역제를 도입·법제화하여야 함(엄기철 국토개발연구원 연
구위원, 세계 96.10.10,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114면)·제96-2호(74~75면) 참조

건설·교통

『건설산업기
본법(가칭)』
제정의견

■ 부실시공 처벌강화

부실시공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건설산업기본법(가칭)』을 마련하며 ①대규모 공사의 발주청을 대신하여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도입하고, ②십장 등 현장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시공책임과 관련하여 '현장실명제'를 도입하며, ③발주처·시공·감리·설계 업체간 건설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는 건설분쟁중재원 설립하고, ④건설기능공의 경력, 공제금 등을 합산관리하는 건설노동자 복지카드구입, 도급한도액을 시공능력공시제도로의 전환하는 것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함(건설교통부, 동아 96.6.24, 5면).

※ 「입법의견조사」 제96-2호(61면) 참조

『건설업법』
개정건의

■ 건설 하도급공사 실명제 도입

건설공사의 실제 시공집단인 십장을 합법적인 시공자로 인정하는 하도급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원도급자의 공사 선급금 지불을 의무화하여 정식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함(행정쇄신위원회, 한국 96.9.2, 3면).

■ 건설 입찰담합 구속요건 완화

『건설업법』, 『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나뉘져 있는 입찰담합 처벌 규정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할 경우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일원화 대신 담합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인 『건설산업기본법(가칭)』 상의 담합범위에 대한 규정을 종전의 ‘모든 담합행위’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나 예정가격을 올리기를 위한 담합행위’로 구속요건을 완화하기로 함(건설교통부, 경향 96.11.11, 8면).

※ 「입법의견조사」 제7호(67~68면) · 제9호(103~104면) · 제12호(94~95면) · 제95-1호(93면) · 제95-3호(99면) · 제95-4호(84면) 참조

『건축법』
개정 의견

■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법령 정비

『건축법』상 재개발·재건축시 허용되는 용적률 상한선은 4백%로 90년에 제정된 이 규정이 현재의 변화된 도시상황하에 적용된다면 도시인구과밀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인 바,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야 함(세계일보 사설, 96.11.26, 3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1면) · 제8호(105~106면) · 제94-1호(74면) · 제94-5호(120~121면) · 제94-6호(104면) · 제95-1호(94면) · 제95-2호(109면) · 제96-2호(61~62면) 참조

교통행정일
원화관련 입
법의견

■ 교통행정의 일원화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행정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단속권은 경찰에게로 2원화되어 있어 교통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므로 경찰이 관장하고 있는 교통신호체계 관리·운영권과 버스 전용차선 단속권을 서울시로 이관하여 교통행정을 일원화하여야 함(서울시의회 『서울시 교통정책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조선 96.6.11, 3면).

『도로교통법』 개정 의견

- 주·정차시 시동 고도록 법제화
시동을 켜놓고 주·정차하면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바, 도로변 등에 2~3분 이상 차량을 주·정차할 시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 이의 위반시 경고장 부착,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함(서울시, 한겨레 96.11.30, 25면).
- ※ 「입법의견조사」 제13호(86면)·제94-1호(77면)·제94-6호(109~110면)·제95-1호(96면)·제96-2호(66면) 참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의견

- 입주기업 교통영향평가 면제
개별기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공단 신축시 공단차원에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고, 개별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바, 개별기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일괄 면제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면제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장건축허가 심의때 공장의 진·출입구와 주차장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제도화함(행정쇄신위원회, 국민 96.11.27, 2면).
- ※ 「입법의견조사」 제95-3호(102면) 참조

『지하수법』 개정 의견

- 지하수개발 허가제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 ①현재 신고만으로 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하루 1백~2백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②지하수 개발후 관계기관에 준공신고를 하고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이용 주민들의 식수난을 보호하도록 하며, ③지하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건설교통부, 세계 96.6.20, 9면).

과학기술 · 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과학기술 개발 부담금 신설

- 21세기 선진 과학기술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①과학기술개발 부담금 신설, 기업의 투자유도 정책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지원 ·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양여 ·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를 꾀함(과학기술처, 국민 96.6.14, 1면).
- 국내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문 비중을 25%로 규정하고 연구개발비를 5% 수준으로 상향시키며,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투자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기초연구에 필요한 대형공동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함.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산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의 현재 12%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세를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 ·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한국일보 해설, 96.6.15, 24면).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견

■ 통신케이블 매설시설 의무화

- ①택지 · 산업단지 · 철도 · 도로 등의 건설시 통신케이블의 매설을 위한 공동 통신구와 통신관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설립시 현재 유선 10%, 무선 33%인 동일인 지분 제한 적용을 완화함. ③통신위원회의 기능 · 조직을 강화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④불공정행위는 법 위반 사실의 공표후 이에 대한 사과광고를 내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정보통신부, 동아 96.9.1, 3면).

■ 컴퓨터 통신 편향규제에 반발

컴퓨터 통신망의 검열은 음란·퇴폐물 방지의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성은 법조항 개정운동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①『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17조(누구든지 국가이념과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 행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통신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있으며, ‘우려’라는 추상적 규정은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악법의 소지가 있고, ②『전기통신사업법』 제5장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한 내용에 대한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다’(제53조제3항)는 항목은 개인의 편지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일이 검열한다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러한 포괄적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등의 규정 내용이 검토되어야 함(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신문 96.7.22,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4~55면) · 제3호(69~70면) · 제94-1호(77면) · 제94-6호(110면) · 제95-2호(115~116면) 참조

환 경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입법의견

■ 주민 반발 최소화 역점

①소각장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을 위하여 소각시설 건설비의 30~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반면에, 매립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하고, ②시·군·구별 자체 책임 하에 단독적인 시설 설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소각시설 설치 추진 성과에 따라 국고 또는 시·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시·도 운영의 매립장 반입수수료 차등화 등으로 소각시설 확충을 유도함. ③법령은 시설 설치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운용하도록 하고, ④쓰레기 소각시설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의견

투자비에 대한 용자 등 투자유인책의 개발과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함(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 서울 96.8.30, 5면).

■ 생태계 파괴행위도 환경범죄특별법 적용

환경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①『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신체상 피해에서 자연생태계 파괴행위나 재산상의 피해로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②처벌기준을 벌금형 위주에서 신체형 중심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며, 환경관리인 등 종업원에 대한 처벌에서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도록 함(정종택 환경부장관, 한겨레 96.6.19, 2면).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은 ①어패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②법령으로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훼손하거나 바다·하천·호소·지하수를 통상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며, ③환경오염물질의 범위를 대기·수질·토양오염 물질이나 오수·분뇨·폐기물·농약·석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도록 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함(환경부, 서울 96.9.10, 1면).
- ①환경보호와 관련한 사법적 제재와 관련하여 현행의 형사법은 법인체 소속의 개인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법자와 법인체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②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으로 법인체의 고위층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③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 보상방법은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어려우므로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장영민 이대

교수, 「환경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 『아시아 지역의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간 협력의 효율화 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주최 세미나 소주제 발표문, 서울 96. 11. 2,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82면)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의견

■ 한국환경영향평가원 설립

①비상설기관인 평가위원회 대신 상설기관으로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여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피하고, 평가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입하며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함. ② 최초 평가협의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가원'이 재평가하며, ③협의된 허용기준을 개별 법령의 허용기준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④사업자로 제한된 이의신청 자격을 주민이나 전문가로 확대함(경실련 공청회, 중앙 96.7.15, 16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6면)·제3호(71면) 참조

보건·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입법의견

■ 술·담배에 건강부담금

현재 담배에 국한되어 있는 건강부담금 부과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 위해물품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 예방보건사업비의 1백분의 10이내에서 건강부담금으로 징수하여 매년 1백20억~3백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여야의원, 동아 96.11.30, 39면).

※ 「입법의견조사」 제9호(107면)·제11호(98면)·제94-1호(78면) 참조

『노인복지법』 개정 의견

■ 버림받은 노인, 자녀에 부양비 청구가능

-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은 그 자녀들에게 부양비

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토지 취득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함(보건복지부, 조선 96.8.20, 46면).

-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는 바, 특별법에 제3자에 의한 구상권을 명시함으로써 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신홍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 조선 96.8.20, 46면).

■ 노인복지법 ‘선언적 의미’만 강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을 결하고 ‘... 할 수 있다’와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가 각종 복지시설을 대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간접부양’ 방식의 채택으로 정부가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서구화되는 국민의식속에서 오히려 바람직할 것임(경향신문 기획·연재, 96.9.1, 3면).

※ 「입법의견조사」 제11호(98면)·제95-4호(68면)·제96-1호(45~46면)·제96-2호(77~78면) 참조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
률』 개정의
견

■ 불가피한 장묘개혁

- ①현재까지 점유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불법묘지라도 점유권을 인정하여 철거할 수 없었으나, 20년 초과시라도 불법묘지로 인정하여 철거가능하도록 하고, ②묘지면적도 현행 9평 이하(집단묘지), 24평 이하(개인묘지)에서 3~6평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함(보건복지부, 경향 96.10.14, 3면).
- 궁극적인 개선책은 ①묘지면적을 서구국가처럼 1.5평규모로 줄이고, ②봉분 대신 대리석판에 고인의 약력을 새겨넣는 평토

장을 도입하고, ③묘지를 주거지부근 공원으로 만들며, ④현재 22%인 화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여러곳에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서울신문 사설 96.10.25, 3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96면) · 제94-5호(125면) 참조

『식품위생법』 개정 의견

■ 식품 유통기한표시 자율화

-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유통기한으로 규정하여 유통기간 초과시 폐기처분하므로 사업자의 비용상승, 소비자 부담,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바, 미국·일본의 표시제도처럼 유통기한을 사용·판매기한, 제조일자,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소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세분화 함(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국 팀장, 국민 96.11.27, 22면).

- 가공·포장기술의 발달로 품목에 따라 식품유통기한도 다양하게 연장하여야 하는 바, 유통기한 설정을 자율화하여 업체 스스로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정기혜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국민 96.11.27, 22면).

※ 「입법의견조사」 제7호(70~71면) · 제94-2호(112면) · 제95-1호(97~98면) · 제95-3호(104면) · 제95-4호(89면) · 제96-2호(80~81면) 참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의견

■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은 ①관장기구인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이 조사·연구기능에 그치고, ②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정무장관실(제2)이 맡고 있는바, 기금 사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됨(국민회의 논평 「시행되자마자 개정작업을 결심해야 하는 여성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 한겨레 96.7.4, 12면).

- 법 시행령의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제3조)와 '여성정책 기본계획(제4조, 제5조)' 등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며, 자치단체의 여성기본정책의 미비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는 바, 이의 개정이 시급함(여성계, 한겨레 96.7.4, 12면).

■ 의료분쟁조정법안

의료분쟁조정법안은 ①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의료피해배상의 대상을 의료행위, 헌혈·수혈 및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자로 하고, ②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며, ③피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하고,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④제3자의 의료분쟁개입 금지, 난동행위 등 진료 등 진료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인 등의 형사처벌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보건복지부, 동아 96.7.15, 38면).

■ 의료사고 면책범위 대폭 확대

①소송을 통하여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②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함. ③의료인이 책임공제에 가입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여도 △무자격 의료행위 △약물과민 반응검사 미 실시 △처방과 다른 약 사용 △수술 뒤 가위, 바늘 등의 몸속 방치 등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피해자의 뜻과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보건복지부, 한겨레 96.9.25, 22면).

■ 의료사고 책임자의 가중처벌규정 삭제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하여 ①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금함은 『민법』에서 조차도 불법행위채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하지 않고 있고, 의료사고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그 법률적 성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인 바,

양도나 압류를 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②의료분쟁의 당사자일
방이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배상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나
私人일 경우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정의 필
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법안은 삭제되어야 함(대한변호사협회,
법정신문 96.11.18, 2면).

※ 「입법의견조사」 제5호(62~63면) · 제7호(71면) · 제13호(92~94면)
· 제94-3호(124면) · 제94-5호(127~128면) · 제94-6호(113~114면)
· 제95-3호(105면) 참조

『자원봉사법
(가칭)』
제정의견

■ 민간운동 지원의 입법방향

자원봉사활동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증대된 가정복지 수
요를 충족시키고 공동체사회를 재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할 공적·제도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
과 운영,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하
고, 시민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운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이
를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함으로써 민간의 사회복지사업과 유
기적으로 연계되게 하고,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는
내무부 소관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임.
환경보존, 범죄예방, 재난관리,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문제에 대
한 공익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민간운동단체에 의한 지
역사회운동 내지 시민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원
등에 관해서는 이른바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논
의되어야 할 것임(김인재 상지대 교수, 「자원봉사법 바르게 만들
자」, 참여사회 96/11·12, 28 29면).

『장기등이식
에관한법률

■ 뇌사·장기이식 합법화

뇌사인정과 장기이식의 합법화를 위하여 ①현재 심장사만 인정

『가칭』 제정
의견

하는 법적인 사망개념에서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뇌사의 개념을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②뇌사판정의 오류에 대비하여 판정기준을 법규로 정하고 뇌사판정병원과 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며, ③장기매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뇌사판정에 교사나 방조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장기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몰수하며 장기적출이 가능한 경우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함. ④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⑤장기이식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수여자와 공여자,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의료기관 등 관련정보를 총괄관리하도록 함. ⑥장기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시안』, 한국 96.6.15, 33면).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2~113면) · 제94-5호(128면) · 제95-2호(119~120면) · 제96-1호(46~47면) 참조

법원 · 법무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가정폭력방지법안

정치권과 여성계가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법안』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화 등 보호처분 조항과, 가정폭력 현장을 확인했거나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이웃 신고 의무제 조항인데 이는 가해자를 수탁·요양기관 등에 가두어 치료하는 '감치·치료명령'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웃간 가정폭력 신고의무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등이 문제됨(한겨레

기획·연재 96.6.13, 12면).

■ 퇴거명령제 도입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퇴거명령제도'를 마련하고, 이는 경찰이 담당판사에게 가해자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부터 물리나게 하는 명령을 신청하고, 담당판사는 12시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함 (국민회의, 한겨레 96.9.5, 12면).

※ 「입법의견조사」 제13호(96면) · 제96-1호(47면) · 제96-2호(81~82면) 참조

<가정폭력방지법(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가정폭력 예방 · 방지의 '국가 의무' 규정	· 응급신고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육·상담 실시 · 가해자 감호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전담직제 설치 및 전담자 육성·배치 · 가정보호위원회 운영 ·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가능	· 폭력발생시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 ·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보호유치권, 퇴거명령 신청권 부여 · 민간단체의 상담소·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의무화 · 가정폭력사건을 형사범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다룸 · 비공개로 심리
피해자 보호	· 직계존속의 가해자 고소 가능 · 상담소·피해시설의 장에게 고소대리권 부여 · 피해자에게 쉼터나 피난처를 의무적으로 제공 · 피해자가 미성년·노인·장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한겨레 96.9.5, 12면)

검·경의 중립화관련 입법의견

■ 검·경 중립화

- ①검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동안은 공직취임이 불가하고, 다른 정부기관장들과 같이 국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하며, ②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추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추천권 등의 실질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함(야당, 국민 96.6.13, 4면).
-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제한은 공민권 박탈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중립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으며, 국가·지방경찰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예산·공조수사 등의 단점이 있음(손학규 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민 96.6.13, 4면).
- ①검사의 직급 및 직급정년제와 검사의 청와대과견근무 등이 검찰의 중립을 어렵게 한 바,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②검찰총장은 임기후 3년내 공직취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③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방지하도록 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맞서 주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함정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검찰』 주제발표문, 한국 96.8.13, 37면).

■ 검찰청법 개정

- ①'검사공동체의 원칙'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는 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②검찰총장은 청문회·국회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퇴직후는 일정기간 공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③검찰보고사무의 개선·검찰심사회제도의 신설·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차병직 변호사, 「검찰청법·경찰법개정에 대한 의견」, 법률신문 96.10.17, 6면).

* 「입법의견조사」 제5호(63면)·제94-5호(129면)·제94-6호(115면)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의견

■ 주택가 사고 '10대 위반'에 포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뺑소니, 10대 중대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시에도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피해자를 중상에 빠뜨린 가해운전자 처벌 조항을 만들고 △스쿨존과 주택가에서의 사고를 특례법상 10대법규위반에 추가해야 할 것임(동아일보 기획·연재, 96.9.7, 29면).

■ 교통사고재판절차법 제정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하여는 ①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일본의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을 참조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재판절차법(가칭)』을 제정하고, ②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계화단속을 강화하고, ③자동차 보험규제를 철폐하여 보험회사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며, ④기계화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범칙금 직과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함(설재훈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공학박사, 동아일보 기획·연재, 96.9.7, 29면).

『국가보안법』 개정 의견

■ 안기부 수사권 재확대

- 현행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수사권 등의 제한으로 간첩수사 및 좌경·용공분자 척결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이적단체표현물 제작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등에 대

한 안기부 수사권을 회복하고, △무차별적인 변호인접견 허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복원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함(신한국당, 세계 96.9.4, 29면).

- 안기부의 설립 목적은 반국가단체의 구성, 지원, 편의제공외에 적지 잠입·탈출 등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사하는 것임에도 수사권의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7조)와 이들에 대한 불고지죄(10조)에 관한 수사를 제외시킴으로 대공수사권이 위축된 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죄에 대한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되 모든 수사상황과 내용을 나중에 정보위에 보고, 심의를 받게 하는 장치를 법에 규정할 수 있음(한국일보 사설, 96.9.8, 3면).
- 안기부의 법개정 논의 근거는 △동일 사건의 일부를 검·경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의 일관성' 상실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혐의자 체포불가 △검찰의 하부기관 부존재,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 한계 △변호인 접견남발로 인한 수사지장 등이나, ①안기부는 현재에도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 목적수행행위,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간첩행위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②수사권과 관련하여 안기부는 타수사기관에 정보협력의 의무가 있는 바, 검·경의 대공수사력과 관련한 미비점은 이의 조직적 보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박연철 변호사, 「안기부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와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대토론회, 한겨레 96.11.29, 2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7~58면)·제2호(58면)·제6호(102면)·제92-2호(113면) 참조

『국적법』 개정의견

■ 엄격심사 국적 부여

현행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가 우리 국민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결혼후 3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한 자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법무부, 법률신문 96.11.14, 1면).

※ 「입법의견조사」 제13호(97면) · 제94-6호(115~116면) 참조

『민법』 개정
의견

■ 읍·면·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부여 추진

당해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부인을 찍는 '확정일자'는 그 일자의 전후에 따라 권리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 공증기관은 법원, 등기소, 검찰청, 공증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민법』 부칙을 개정하도록 함(행정쇄신위원회, 법률신문 96.8.15, 3면).

※ 「입법의견조사」 제94-5호(129~130면) · 제95-2호(121면) 참조

『민사소송
법』 개정
의견

■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실현을 도모

- 종래 변론방식인 수시제출주의와 형해화된 구술주의 폐단을 시정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기일에 심리를 집중함으로써 심리의 충실화를 기하고 변론기일에 불필요한 공전을 피함으로써 소송촉진을 기하는 심리방식인 집중심리제를 실시하여 ①사건의 정확한 파악없이 행하는 부실한 소제기·기일 공전의 주요원인인 불성실한 답변서 제출을 방지하고, ②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③소송대리인의 특정사건 중복출정을 방지하고자 같은 기일에 쌍방증인들을 일괄조사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도록 함(법률신문 96.11.14, 1면; 서울지법,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시범실시 결과 보고대회』, 법정신문 96.11.18, 3면).

- 쟁점정리시 담당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자칫 소송대리인들로부터 '예단'이나 '심증'의 의혹을 살 수 있고, 소송구

조가 당사자주의에서 직권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음(법률신문 96.11.14,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82~83면) · 제96-1호(48면) · 제96-2호(83면) 참조

『범죄신고자
등보호법(가
칭)』 제정의
견

■ 범죄신고자 · 증인의 제도적 보호

형사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살인으로 부터 범죄신고자 · 증인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①『범죄신고자등보호법(가칭)』을 제정하여 신고 · 진정 ·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를 한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②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③언론기관이 범죄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④보복의 우려시 필요적 보석의 예외를 두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⑤‘범죄신고자보조금제도’를 신설하여 보복 우려로 인한 이사 · 전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함. ⑥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형사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좌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 공판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동행하여 조언하는 등 조력할 수 있도록 함(법률신문 96.8.15,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5호(130면) · 제95-1호(100~101면) 참조

『부정수표단
속법』 개정
의견

■ 헌법상 기본권 보호

-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사채를 융통하는 과정에서 수표의 발행 후 부도가 나면 곧바로 형사입건이 되는 것은 어음을 부도낸 경우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여 불평부당한 것으로 ①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및 창의를 존중 원칙 등에 위배되며,

②개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에는 국가의 불간섭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전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시민의 신문 해설 96.6.24, 3면).

- 수표를 발행하여 마련한 사업자금을 착복하거나 고의 부도를 낸 악덕 기업인은 '횡령죄',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부심사제를 도입하여 고의성 여부를 선별하여 구속시켜야 함(학계, 시민의 신문 96.6.24, 3면).
- 수표가 현금처럼 유통되는 현실에 비취볼 때 부도수표 발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될 경우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재정경제원, 법무부).

※ 「입법의견조사」 제95-4호(91면) 참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환경사범 단속권 확대 추진

희귀동물의 밀렵 등 생태계 파괴행위와 토양오염 등에 대한 단속의 본격화를 위하여 대기오염 등 6개 분야에 한정하여 오던 환경사범권의 적용범위를 환경관련 20개 법령으로 확대하여 ①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오수·축산폐수 등 6개 기초분야의 한정된 환경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생태계 파괴, 토양, 지하수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②환경사범권은 환경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사범을 단속하도록 환경부 본부와 지방환경청 직원 6백 30명에게 부여하도록 함(환경부, 한겨레 96.11.2, 25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친고죄 찬·반론

- 성폭력을 개인적 범죄로 간주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고죄로 존속해야 한다는 친고죄 찬성론과 성폭력 범죄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범죄이고 가해자들에게

악용되어 은폐의 결과를 초래하여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성적 문제라고 잘못 인식시키는 역기능적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반대론이 있음(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중앙 96.7.13, 7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친고죄 규정에 대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강압 등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힘든 미성년자에게 친고죄를 적용하는 불합리가 지적되어온 바, 피해자의 신고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하도록 함(한겨레신문 해설, 96.7.18, 2면).
 -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보는 현행 법조문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개정하고,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하도록 함(신낙균 국회의원회의 의원, 시민의 신문 96.7.22, 4면).
 -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친고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제도로 △피해자대리인 제도 신설 △피해자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함(국민회의, 한겨레 96.9.5, 12면).
- ※ 「입법의견조사」 제1호(59~60면) · 제2호(57면) · 제7호(72~73면) · 제8호(120~121면) · 제9호(111~112면) · 제13호(103~104면) · 제96-2호(83~84면) 참조

『소년법』 개정의견

- 비행소년부모에게도 특별교육
- ①비행소년의 비행원인이 보호자의 이혼, 만벌이 등으로 인한 무관심, 응석받이 교육, 체벌 내지는 학대 등으로 밝혀질 경우 보호자를 상대로 특별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②소년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자 등이 없는 소년 등을 심리하는 경우 변호

사나 사회사업가,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국선보조인을 선임하여 소년을 보조하도록 하고, ③적절한 보호처분결정을 위하여 비행소년들이 받은 보호처분결과를 전국 소년부에서 전산으로 입력·관리하여 재판시 이를 활용하며, ④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⑤비행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4세로 낮추도록 하고, ⑥급증하는 약물남용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국립치료기관의 설립 및 종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대법원, 법률신문 96.11.28, 2면).

※ 「입법의견조사」 제95-4호(92면)·제96-1호(50면) 참조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요보호 아동 전담기구 설치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존권과 건전한 성장발달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 온 바, 국가는 요보호아동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내의 전문가 보호하에 '그룹홈 제도'나 전문가의 정기적 접촉과 상담을 실시하고, '유료 가정위탁제도'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시민의 신문 96.7.22, 4면).

위임입법관련 입법의견

■ 위임입법의 통제

현대 국가의 복잡다양화·전문화에 따른 행정입법의 증가는 ①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②법률의 시행일까지 시행령이 불비하여 법률의 사실상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초래하고, ③위임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원칙적 기준없이 부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 바, 대의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사항이나 중요정책사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의 위임시는 모법의 위임

취지대로 규정되었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중앙일보 칼럼, 96.6.14, 6면).

『점포임대차
보호법(가
칭)』 제정안
관련 입법의
견

■ 주택임대차에 준하는 보호 가능하도록

주택의 경우와 같이 점포건물의 법적 보호를 통한 영세상인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①일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나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점포의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권리금 중 일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임대점포인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의 등기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신한국당 『점포임대차보호법(가칭)』 의원입법안, 법률신문 96.8.15, 3면).

■ 권리금의 유형별 분류

국회에 제출된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은 △점포임대차는 임차인이 점포의 인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갖춘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점포의 임대차 기간을 2년간 보장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 중 일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①법률안의 주된 목적인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의 보장과 임대인의 보호 등의 경제정의 실현을 간과하여 권리금분쟁·임대인의 피해를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으며, ②법률안의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③영세상인이나 권리금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혼란을 야기하며, ④대법원의 판례가 부정하는 권리금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은 권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권리금 수수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윤철홍 숭실대 교수, 한겨레 96.11.7, 23면).

※ 「입법의견조사」 제96-1호(51면) 참조

『집행법(가칭)』 제정의 견

■ ‘강제집행’편 민사소송법서 분리 추진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는 그 기본원리와 불복방법 등이 상이하여 단일법률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①민사에 관한 『집행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고 그 편제를 총칙,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편으로 구분하고, ②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명시 절차를 개선하고 명시 의무의 위반시 30일 이내로 감치하며, ③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는 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바, 법원이 적극적으로 권한있는 일정한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함. ④채무이행의 간접강제효과를 얻는 ‘추정과산결정’,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소액채권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우선배당하는 ‘소액집행의 특례’ 등의 도입도 필요함(대법원, 법률신문 96.7.22, 1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견

■ 외국인의 국내체류 무한정 가능

①현재 외국인의 체류기간갱신허가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온 바, 이를 폐지하여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②장기체류외국인이 체류지(주소)를 변경한 경우 각각 해오던 전출·전입신고는 전입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 ③외국인에 대한 보호실 일시보호 기간은 현재의 48시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④외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여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서의 재발급 없이도 최종 출항시까지 유효하도록 함. ⑤외국인 산업기술연수자가 연수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연수를 종료하는 경우 연수업체의 장에 대하

여도 외국인고용주와 같이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⑥선박 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장, 기장 및 운수사업자의 협조의무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⑦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자에 대하여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는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⑧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불법고용주에 대하여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여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내·외국인의 불법출입국을 교사·방조하거나 이를 예비, 음모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도록 함(법무부, 법률신문 96.7.22, 2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제95-1호(102~103면)·제95-4호(93면) 참조

『형법』 개정
의견

■ 사형제도의 폐지

- 사형은 인간이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범죄이며 회개와 교화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고 오판의 모순을 용인하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하여야 함(예장통합 인권위원회, 국민 96.6.15, 12면).
-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요구에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사고의 잔재임(김일수 고려대 교수, 국민 96.6.15, 12면).

■ 참고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8일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하고, 법적용에 있어서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지니는바 선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함.

※ 「입법의견조사」 제1호(58면) · 제94-6호(120면) · 제95-1호(103면) · 제95-3호(107면) · 제96-1호(51면) 참조

■ 국제범죄자 입국땀 국내법 처벌

세계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형법총칙의 장소 및 인적 적용대상 범위에 '세계주의'를 도입하여, 해적·전쟁도발·항공기납치·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와 통화위조·마약밀매 등 다수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 민족학살·인신매매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우리 국민이나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함(법무부, 한국 96.9.5, 1면).

환경사법관련 입법의견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신설

- 원인자 부담의 명분으로 제조업체에 각종 부담금을 사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물가상승요인이 되는 바,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후처벌보다는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바람직함(통상산업부, 세계 96.6.28, 9면).
- 부담금 및 예치금 부과를 통하여 오염의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함(환경부, 세계 96.6.28, 9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 법관 피의자 신문후 구속여부 결정

①구속영장심사시 영장담당법관은 수사기록에 의한 영장발부여 부를 반드시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 신문하여야 하고, ②피의자가 병에 걸려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관이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③신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하고, 피의자신문 등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하여 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영장심사만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제를 신설하도록 함(대법원, 조선 96.11.20, 1면).

〈형사소송규칙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구속영장실질심사	규정없음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신문
영장전담법관	1일 당직판사가 돌아가며 담당	영장심사전담 법관지정 담당
구속사유판단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 합의여부	도주, 증거인멸여부
영장유효기간	관행적으로 10일	모든 영장에 대해 7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시간	규정없음	사회봉사 5백시간 이내 수강 2백시간 이내
소년사건재판	일반사건과 함께 접수순으로	신속히 우선 재판
구속사실통지	3일 이내 서면	24시간 이내 전화팩스도 가능
판결문송달	실형 피고인만	모든 피고인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

①피의자 긴급체포시 구속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서 24시간이내로 단축하고, ②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입법화, ③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확대하며, ④현행법상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바, 전반적으로 이를 연장하며, ⑤재정신청의 제한을 없애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기간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야 함(한인섭 서울대교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법률신문

96.10.17, 6면).

※ 「입법의견조사」 제8호 (121~122면) · 제12호 (110면) · 제13호 (105~106면) · 제94-1호 (85면) · 제92-2호 (116~117면) · 제94-5호 (131~132면) · 제94-6호 (120~121면) · 제95-2호 (127~128면) · 제95-3호 (108면) 참조

〈참 고 자 료〉

정부 확정 노동법개정안 요약(96. 12. 3)

1.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 ◇ 복수노조
 - =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허용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 ◇ 제3자 개입금지
 - =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기타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법적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 ◇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근로
 - =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외주)허용
- ◇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
 - = ▲공익사업 범위-정기노선 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 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에 한정
-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
 - =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 ▲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 노동쟁의 조정절차
 - = ▲쟁의발생 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능(조정전치제도)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여부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방안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함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

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3.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일부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 때에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포함)에 의하여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제)

-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월이내로 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재량근로시간제) ▲출장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제한 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 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단시간근로제

- =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2년 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 최저 취업연령

= 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 연·월차 유급휴가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도록 함

◇ 휴업수당

= 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수 있게 함

◇ 퇴직금제도의 개선

=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 근로자 파견

=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4.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 ◇ 교원의 단결권 등 문제
 -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상급연합단체 결성 가능 ▲교섭 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시행시기 : 99년부터 시행
- ◇ 공무원의 노동권
 - = 제2차 개혁과제로 검토
 - ◇ 노동행정 서비스의 개선
 - = ▲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
 - ◇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
 -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 ▲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직급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1~2급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등
 - =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신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 ▲판정·조정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 부여(당해 사건과 관계있는 위원회 회의 참여 배제)
 - ◇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
 - = ▲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여 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심판·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정함 ▲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각 7~20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사건과 2곳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

5.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기반 조성

◇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협회의 기능을 보장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 고용조정 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 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

입법의견조사 96-3 최근입법의견 동향

1996년 12월 25일 印刷

1996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朴 圭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값 4,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11-8 93360

